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외 16개 시·도지사

1.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암관리」 사업 중 「암검진 지자체보조」 내역사업 추진을 위한 1사분기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국가암관리(암검진)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외 16개 시·도지사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1.1 ~ 2015.12.31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암검진 지자체보조	31,867,037	14,614,000	17,253,037	-	-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단, 서울 국비 30%, 지방비 70%)
- 사업내용 : 암검진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 부 목 적 : 암검진 지자체보조

예 산 과 목 : 국민건강증진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500	3532	301	330-01
보건	보건의료	암및희귀질환 지원	국가암관리 사업지원	국가암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시도별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교부후잔액
암검진 지자체보조	14,614,000	5,876,000	4,369,000	4,369,000	4,369,000
서울	1,979,278	795,828	591,725	591,725	591,725
부산	1,085,798	436,578	324,610	324,610	324,610
대구	895,664	360,129	267,768	267,768	267,768
인천	698,651	280,914	208,868	208,868	208,868
광주	738,625	296,986	220,820	220,820	220,820
대전	520,064	209,107	155,478	155,478	155,478
울산	190,619	76,644	56,988	56,988	56,988
세종	40,430	16,256	12,087	12,087	12,087
경기	2,845,400	1,144,079	850,660	850,660	850,660
강원	583,471	234,602	174,435	174,435	174,435
충북	545,468	219,322	163,073	163,073	163,073
충남	669,243	269,089	200,077	200,077	200,077
전북	832,358	334,675	248,841	248,841	248,841
전남	844,665	339,623	252,521	252,521	252,521
경북	788,046	316,858	235,594	235,594	235,594
경남	1,138,501	457,769	340,366	340,366	340,366
제주	217,719	87,541	65,089	65,089	65,089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암검진 지자체보조」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 율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